

# 설비건설업계가 알아야 할 주요 신고사항 및 벌칙규정 ⑪

설비건설업을 하다 보면 챙겨야 할 서류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어떤 것은 시기를 맞추지 못해 벌금을 물 때도 있고, 어떤 것은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증이 많아진다. 이 때 도움을 받기 위해 관련기관 및 협회 등에 일일이 문의하기도 하지만 번거롭기 그지 없다.

설비건설업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알아두면 업무처리에 부담이 적을 뿐만 아니라 벌칙을 미리 피하게 돼 경영상 이익을 가져다 준다.

본지는 설비건설업체가 알아야 할 주요 신고사항 및 벌칙규정을 지난 9월호부터 연재한다.

## 글 쓰는 순서

### II. 건설관련 법령 벌칙규정

1. 벌칙의 종류
2.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벌칙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식의 벌칙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불이익 처분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불이익 처분
6. 건설기술관리법령상의 벌칙
7. 각종 노무관련 법령상 벌칙
  - 1) 산업재해보상법 ·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2) 근로기준법 ..... 지난 호
- 3)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관련 사용자에 대한 벌칙

### 건설공사 직접시공의무제도 시행에 관한 안내

..... 이번 호

1. 건설공사 직접시공의무제도 개요
2. 사례(CASE)별 직접시공의무대상 공사범위  
..... 다음 호
3. 행정처분 관련 사항

## 1. 건설공사 직접시공의무제도 개요

□ 무자격 부실업체들의 난립과 “입찰브로커” 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접시공제도를 도입

- 도급금액이 30억 미만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30% 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법 제28조의2, 시행령 제30조의2)

※ 직접시공 : 해당 공종에 자기 인력, 자재(구매 포

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것을 말함(직영시공)

-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 등을 위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직접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음(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
- 직접시공계획을 도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발주자에게 제출(직접시공할 공사량·공사단가 및 공사금액이 명시된 공사내역서와 예정공정표 제출)

※ 직접시공계획서 : 별지 제22호의6 서식(시행규칙 제25조의5)

직접시공계획			
직접시공 공종		하도급(예정) 공종	
⑥ 세부공종	금 액	⑥ 세부공종	금 액
소 계		소 계	
⑦ 경비(공과잡비)		⑦ 경비(공과잡비)	
⑧ 일반관리비		⑧ 일반관리비	
⑨ 이 윤		⑨ 이 윤	
⑩ 직접시공 금액 합계		⑪ 하도급(예정)금액 합계	

- 직접시공계획을 미제출시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99조제4호) 및 직접시공의무 위반시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법 제82조제2항 제1의2)

-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발주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법 제28조의2 제3항)

### ■ 건설공사 직접시공의무제도란?

### ■ 건설공사 직접시공이란 무엇입니까?

- 해당 공종에 자기 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 직접시공의무대상이 되는 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을 의미합니까?

- 건설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므로 일반건설업자뿐만 아니라 전문건설업자도 해당합니다.

■ 1건의 공사금액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 1건의 공사금액이라 함은 건설업자(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체를 포함)가 도급받은 도급계약금액(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 포함, 관급자재 제외)을 말합니다.

■ 직접시공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 공사 금액 및 직접시공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 1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30% 이상 금액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 통보주체

■ 직접시공계획 통보 주체는 누구입니까?

-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6 서식에 의한 직접시공계획통보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게 직접시공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공사의 경우

• 공동이행방식

도급받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연대하여 계약이행의 책임을 지므로 직접시공계획서 작성 및 통보의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게 부과되는 의무사항이

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사)가 구성원을 대표하여 일괄적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분담이행방식

도급받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만 계약이행책임을 지므로 직접시공계획서 작성 및 통보의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사항으로 구성원이 각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계약자관리방식

주계약자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 계약이행책임을 지는 외에 다른 구성원의 계약이행책임에 대하여도 연대책임을 지고,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만 계약이행 책임을 지므로, 직접시공계획서 작성 및 통보는 주계약자가 구성원을 대표하여 일괄적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할 수 있을 것이나, 그 통보 의무는 주계약자뿐만 아니라 구성원 모두에게 부과되는 의무사항입니다.

■ 통보기한

■ 직접시공계획서는 언제까지 통보해야 하며,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의 변경이 발생시 어떻게 통보합니까?

- 건설업체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통보서를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및 하도급 할 공사량, 공사단가 및 공사금액이 명시된 공사내역서와 예정공정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의 변경이 발생시에는 발주청

의 사전승인에 의하여 직접시공계획과 직접시공내용을 변경할 수 있을 것이나, 하도급 제한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할 것입니다.

## ■ 통보대상 공사범위

### ■ 통보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범위는?

-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로서 도급금액(장기계속공사 또는 계속비공사의 경우 총공사부기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직접시공의무대상공사가 되며,
- 공공공사뿐 아니라 민간공사도 모두 직접시공 의무대상공사에 해당되며, 하도급 받은 공사에 대해서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계약 체결된 30억원 이상인 공사가, 설계변경 등으로 06. 1. 1 이후 도급금액(총공사부기금액)이 30억원 미만으로 변경된 공사라도 직접시공의무 대상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 직접시공의무대상공사의 기준금액인 30억원은 관급자재비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 직접시공의무대상공사가 되는 경우는 도급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이며, 발주자가 지급한 자재비는 도급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직접시공의무대상공사의 기준금액인 30억원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 도급금액이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30억원 미만인 경우 직접시공 의무대상공사가 됩니다.

## ■ 직접시공계획서 작성관련

### ■ 직접시공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도급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별지 제22호의6 서식의 '직접시공계획' 란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킬 수 있는 항목이 없어 '직접시공 금액합계' 와 '하도급(예정)금액 합계'를 합산한 금액이 도급금액과 일치하지 않게 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5 및 별지 제22호의6 서식의 뒤쪽 작성요령 제7호에서 직접시공 금액의 합계(⑩)와 하도급(예정)금액의 합계(⑪)를 합산한 금액은 도급금액(⑤)과 일치하도록 입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경우와 같이 직접시공 부분의 금액과 하도급(예정)부분의 금액 비율에 따라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즉, 세부공종 금액 합계(⑥), 경비(⑦), 일반관리비(⑧), 이윤(⑨)을 모두 합한 금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한 금액을 더하여 직접시공금액합계(⑩) 및 하도급금액합계(⑪)란에 기입하면 될 것입니다.

### ■ 수급인이 시공에 필요한 자재나 장비만을 조달하여 제공하고, 인력 등 시공부분을 하도급 하는 경우 직접시공 계획은 어떻게 작성하여야 합니까?

- 직접시공계획서 양식(별지 제22호의6 서식) 중 직접시공 공종에는 자기 인력·자재(구매 포함)·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하여 직영시공하는 공종만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 수급인이 하도급 계약시 시공에 필요한 자재나 장비만을 제공하고 시공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시공과 관련된 자재나 장비는 직접시공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직접시공계획서 작성시 1건 공사 도급금액에는 자재 및 장비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하도급 시공과 관련된 자재나 장비 부분의 금액은 직접시공 공종에서 제외하고,
- 수급인이 제공하는 자재나 장비 부분의 금액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도급(예정)공종 금액에 별도로 기재하여 직접시공 금액합계액과 하도급(예정)금액 합계를

합산한 금액이 도급금액과 일치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시) 도급받은 공사금액이 약 20억원인 택지조성공사 중 장비임대 비용이 4.5억원, 직접시공부분이 약 6.1억원, 하도급 부분이 약 9.4억원인 경우(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임)●

직접시공계획			
직접시공 공종		하도급(예정) 공종	
⑥ 세부공종	금 액	⑥ 세부공종	금 액
배수로 등	170,000,000	토공 및 부대공종	750,000,000
U형관 자재구입	350,000,000		
소 계	520,000,000	소 계	750,000,000
⑦ 경비(공과잡비)	17,000,000	⑦ 경비(공과잡비)	23,000,000
⑧ 일반관리비(5.5%)	29,535,000	⑧ 일반관리비(5.5%)	42,515,000
⑨ 이 윤(15%)	47,480,250	⑨ 이 윤(15%)	122,327,250
		수급인이 제공하는 장비임차비	450,000,000
⑩ 직접시공 금액 합계	614,015,250	⑪ 하도급(예정)금액 합계	1,387,842,250



### The landlord – 주인

“I had three Scotch and waters, and this bill comes to only fifteen cents.”  
exclaimed the patron.

“I charged you only a nickel a drink.” replied the bartender.

“Aren’t you afraid you’ll wind up out of business?”

“No,” replied the bartender, “I’m not the owner. He’s upstairs with my wife.”

“스카치 석 잔을 마셨는데 계산이 15센트밖에 안 나왔군.” 하며 손님이 놀랐다.

“한 잔에 5센트씩만 계산 했어요.” 라고 바텐더는 말했다.

“이래가지고는 장사가 거덜날거란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아뇨, 난 주인이 아닌걸요. 그는 내 마누라하고 위층에 있어요.”

「재미있는 영어이야기에 확 빠져들기」 중에서